

## 장소사용요금표(제32조 및 제37조 관련)

구 분	사용면적 (㎡)	4대궁·종묘·사직단		그 외		장소사용 신청기한
		기본요금 (1시간 이내)	초과요금 (1시간당)	기본요금 (1시간 이내)	초과요금 (1시간당)	
건물내부	100미만	500,000원	250,000원	250,000원	125,000원	장소사용일 20일 전까지
	100~149	1,000,000원	500,000원	500,000원	250,000원	
	150~199	1,500,000원	750,000원	750,000원	375,000원	
	200이상	2,000,000원	1,000,000원	1,000,000원	500,000원	
건물외부	1,650미만	360,000원	180,000원	180,000원	90,000원	
	1,650~2474	540,000원	270,000원	270,000원	135,000원	
	2,475~3,299	720,000원	360,000원	360,000원	180,000원	
	3,300이상	1,080,000원	540,000원	540,000원	270,000원	

**※ 비고**

1. 건물내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게시
2. 건물내부 장소사용 시 사용면적에 전각 및 그 권역을 포함하여 허가하고, 장소사용요금은 내·외부 사용요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함
3.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의 사용요금은 50%를 감면하여 산정
4. 기본시간 이내 사용은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함
5. 제32조에 따른 비공개일 및 제4조에 따른 공개제한시간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개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소사용은 산정요금의 100%를 가산
6. 단, 궁능유산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일 경우, 장소사용요청일에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(심의대상 기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게시)